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683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6838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23466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홍성필, 최단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웁비 담당변호사 노재구

변론 종결2022. 9. 2.

판결 선고2022. 9. 30.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23466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7. 3.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3. 접수 제761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I 주식회사, C,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925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1) 위 법원은 2018. 11. 29. 'I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6,804,794원 및 그 중 195,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C과 J은 I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각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8. 12. 19.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는 2016. 5.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E, 아들인 C, 딸인 피고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 부동산	서울 강서구 F(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제1 부동산')	1,607,688,080토지: 1,190,573,060건물: 417,115,020	2021. 5. 10.자 및2021. 8. 23.자 감정평가서
평택시 G 외 10필지 (이하 '제2 부동산')	262,663,292	망인 사망 당시 공시지가 기준	
안동시 H 외 3필지(이하 '제3 부동산')	58,444,634	망인 사망 당시 공시지가 기준	

제1 부동산	서울 강서구 F(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제1 부동산')	1,607,688,080토지: 1,190,573,060건물: 417,115,020	2021. 5. 10.자 및2021. 8. 23.자 감정평가서
상속재산 합계	1,928,796,006		

라. E, C, 피고는 2017. 3. 31. '제1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7. 4. 3.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5.자로 채권최고액 816,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K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4.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2, 6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1,966,238,080원이고,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그의 법정상속분 2/7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1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7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생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이 있었다.

1	M 채무인수	198,390,289
2	대여금(2012. 12. 11.)	100,000,000
3	N 물상담보	300,000,000
4	○ 대여금(2016. 4. 14.)	75,000,000
합계	673,390,289	

그리고 E은 C 소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세 430,619,424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C과 E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피고만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법무사의 과실로 신고기간이 도과하여 2016. 11. 22.경 상속포기 신고가 각하되었고, 이에 불가피하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피고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제1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더라도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결과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는 신분상 행위인 상속포기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본다.

가) M 채무인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11, 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주식회사 M(이하 'M')가 P은행에 부담하던 연체이자 48,380,289원을 상환하고 580,000,000원의 잔여채무를 인수함으로써 C은 그 무렵 망인으로부터 사업자금에 해당하는 189,380,289원(= 48,380,289원 + 580,000,000원 - 430,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C은 모 E의 명의로 M의 주식 지분 9.63%를 보유하여 M의 주요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M의 전무로 재직하며 M에 2007. 2. 9.경부터 2010. 4. 23.까지 428,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위 회사의 경영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C은 2010. 4. 2. M와, 채권자 겸 담보제공자인 C이 채무자인 M에 제1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계약서(을2호증의 8)를 작성하였고, 이후 망인 소유였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9.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P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근저당권자 P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2. 21.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위 근저당권은 2012. 4. 18. 해지되고 제1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96,000,000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P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으며, 같은 날 M의 연체이자 등 48,380,289원이 상환되고, 망인 명의로 58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M의 동액 상당 대출원금이 상환된 후 2012. 4. 19. 위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 위 담보제공계약서에서 C을 '담보제공자'로 지칭한 것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M도 망인이 아닌 C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고령의 노인인 망인과 채무자인 M의 연관성은 오로지 아들인 C뿐이므로, 2010. 4. 19.자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M이지만 C과 M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망인은 M의 경영에 관여하던 아들 C을 위하여 C이 회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더구나 M는 2012. 4. 10. 상장폐지결정이 되어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M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추후 M로부터 이를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물상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나) 2012. 12. 11.자 대여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3, 16~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 소유의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P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망인이 2012. 12. 13. Q 명의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Q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망인과 Q 사이에 다액의 자금을 수수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은 Q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아 위 금액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N 물상담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과 을 4,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당시에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Q를 통하여 Q 명의로 ○ 주식회사(이하 'O')의 주식 6,000주를 매수하는 등 2014년경부터 O의 부사장으로서 자금 및 재무 영역 중심으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는 2016. 1. 1. N 주식회사(이하 'N')와 거래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 물건으로, 담보 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4호증의 1), ③ 이에 C은 2016. 1. 12. O에 망인 소유 제1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합의(을4호증의 7)를 한 점, ④ 위 합의 이후인 2016. 2. 18.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N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망인과 채무자의 연관성은 C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N가 2020. 2. 1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S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2016. 2. 18.자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라 할지라도 망인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동기는 실질적으로 아들 C에게 ○ 경영과 관련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은 망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액 300,000,000원 상당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6. 4. 14.자 ○ 대여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2016. 4. 14. 75,000,000원이 출금되어 그 다음 날인 2016. 4. 15. O 명의 계좌에 7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같은 날 채권자 C, 채무자 O, 차용금액 7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왔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C이 망인으로부터 위 75,000,000원의 증여를 받아 그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C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총 673,390,289원(= 198,390,289원 + 100,000,000원 + 300,000,000원 + 75,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

3) C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더 크므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다.

○ 간주상속재산: 1,522,186,295원(= 상속개시 당시 순상속재산 848,796,006원²) + C의

특별수익 673,390,289원)

○ C의 구체적 상속분: -238,479,919원[= 법정상속분 434,910,370원(= 1,522,186,295원 × 2/7) - 특별수익 673,390,289원]

4) C의 사해의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을9호증의 기재와 지금까지 살핀 바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생전 망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에게 상속될 책임재산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C은 2016. 7. 25.경 법무사 T에게 상속포기허가심판청구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2016. 8. 18. 상속포기심판청구가 각하된 점(을9호증), ③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비록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일반인인 C과 피고로서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위와 같은 차이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자신의 채무 면탈을 위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기보다는(실제로 C의 구체적 상속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 E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등 망인의 사망 전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자식으로서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

배려만을 받은 사정이나, 여전히 무자력 상태인 자신보다는 피고가 E을 부양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다른 한편,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핀 바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인 C과 E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일반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동생인 C과 떨어져 장기간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C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순호

판사강희석

판사오연정

별지

1)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8836호 양수금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신청되었다.

2) 앞서 본 상속개시 당시 망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인 1,928,796,006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담보채무액인 1,0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